

순천대학교 강의료 지급규정

제정 2001. 2. 23. 개정 2007. 12. 11.
 개정 2008. 8. 21. 개정 2011. 12. 30.
 개정 2013. 10. 16. 개정 2014. 11. 11.
 개정 2015. 03. 03. 개정 2016. 11. 03.
 개정 2019. 11. 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의의 구분) 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특수강의 : 실험, 실습, 실기 등의 강의
2. 보통강의 : 제1호 이외의 평상강의
3. 특별강의 : 국내·외의 저명인사에 의한 강의
4. 초과강의 : 강의료 지급기준 주당 교수시간 이외의 강의
5. 시간강의 : 전임교원 이외의 교원이 시간제로 담당하는 강의
6. 대단위 강의 : 강좌당 수강인원이 80명 이상인 강좌의 강의

제3조(강의료 지급 기준시간) ① 전임교원의 강의료 지급기준 주당 교수시간은 9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7.12.11)

② 주당 교수시간은 대학 및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의 담당시간을 통산한다. 다만, 학부의 계절학기 수업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11. 03.)

제4조(강의료의 지급) ① 초과강의와 시간강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강의료를 지급한다.

다만, 학부 논문연구(종합설계) 및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대학원 논문연구(세미나 포함)와 수강인원이 3명미만인 대학원 개설 교과목에 대해서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1. 11, 2015. 3. 3)

1. 초과강의료 : 논문연구로 지정된 교과목을 제외한 학부강의 6시간(단, 대학원 전임교원은 학부 강의 3시간)을 강의한 전임교원에게 제3조제1항의 강의료 지급 기준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 (개정 2007. 12. 11 2011. 12. 30, 2015. 3. 3)
 2. 강사강의료 : 총장의 임용에 따라 시간강의를 담당한 자에게 실제로 강의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
- ②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대학교가 임시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휴업기간 중 강사가 담당할 시간은 강의를 한 것으로 한다.

제5조(강의료의 계산) ① 강의료는 매학기 15주를 기준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임교원의 초과 강의의 시간은 1,2학기를 통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파견·신규임용·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한 학기만 강의를 담당할 전임교원은 학기별로 초과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16)

② 특수강의는 2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예·체능계 학과의 교과목 중 총장이 인정한 교과목은 보통강의와 동일하게 계산한다. (개정 2007.12.11, 2008. 8. 21) (항 개정 2013. 10. 16)

③ 강의료는 주단위로 시간을 계산한다. (항 개정 2013. 10. 16)

제6조 (삭제 2007.12.11)

제7조(강의료 지급기준액) ① 시간당 강의료의 지급기준액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급기준액을 증액할 수 있다.

1. 외국인 및 국내 저명인사의 강사강의료는 기준액의 5배 이내
2. 강의에 출강하기 위하여 숙박을 요하는 경우의 강사강의료는 기준액의 3배이내

② 제1항의 1시간이라 함은 1교시를 말한다.

제8조(강의료 지급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 교원에게도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정기시험기간
 2.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 또는 국가적 행사로 인하여 휴강한 때
 3. 정규 강의시간 이외에 총장이 위촉하는 바에 따라 다수의 학생 또는 학생단체를 정기적으로 지도할 때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 대학교의 실제 시험시간표에 의하여 근무한 교원(강사 포함)에 한하며, 제3호의 경우는 주당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강의료 지급기일) 강의료는 특별강의에 대한 강의료를 제외하고는 당월분을 그 다음달 5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01. 2. 23)

이 규정은 2001.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11)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11)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3.)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1.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2항은 2017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